

「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」 신청서

※신청서 제출 기한 (3)일 이전, 보고서 제출 기한 (7)일 이내

		담임		부장	
성명	학년 반 번		휴대폰		
본교 출석인정기간 연간(20)일	신청 기간	1일 기준	20년 월 일 ~ 월 일		총 ()일간
		반일 기준 (4시간 미만)	날짜	2023년 월 일 시 분 ~ 시 분	
	우리 학교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세부 규칙 및 불허기간 확인 ※ 필요시 담임교사와의 사전 협의 또는 문의				
학습형태	<input type="checkbox"/> 가족동반여행() <input type="checkbox"/> 친·인척 방문() <input type="checkbox"/> 답사·견학 활동() <input type="checkbox"/> 체험활동() <input type="checkbox"/> 가정학습()				
목적지			(숙박사) 숙박장소		
보호자명		관계	휴대폰		
인솔자명		관계	휴대폰		
목적					
교외체험 학습계획					
학생안전	교외체험학습이 5일 이상 연속될 경우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주 1회 이상 학생이 담임(담당)교사와 직접 통화하겠습니다.			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함
위와 같이 「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」을 신청합니다. 20년 월 일					
청평초등학교장 귀하			보호자 :	(인)	
			학생 :	(인)	

----- (이하 담임 작성) -----

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통보서

성명	학년 반 번		제 학년 반 번		
본교 출석 인정 기간 연간 (20)일	신청 기간	1일 기준	20년 월 일 ~ 월 일()일간		
		반일 기준 (4시간 미만)	20년 월 일 시 분 ~ 시 분(시간)		
금회까지 누적 사용 기간 ()일	위와 같이 허가 처리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. 20 청평초등학교 ()학년 ()반 담임교사 : (인) 보호자님 귀하				

- ※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(또는 문자)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합니다.
- ※ 신청서 제출 기한은 (3)일 이전, 보고서 제출 기한은 (7)일 이내
- ※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임(담당)교사 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사안(사고) 발생 시 보호자는 담임(담당)교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합니다.
- ※ 교외체험학습이 5일 이상 연속될 경우 주1회 이상 학생이 담임(담당)교사와 직접 통화하여 건강과 안전을 확인시켜야 합니다. 미이행의 경우 가평군 아동복지과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